

석좌교수 임용 규정

제정 2003. 08. 29.

제4차 개정 2019. 06. 2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상지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 석좌교수 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4, 2007.6.18)

제2조(정의) 석좌교수는 국내·외에서 탁월한 연구업적 또는 사회활동으로 명성이 있는 인사로서 본교에서 교육과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교원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초빙석좌교수는 본교 자체 재원에 의하여 보수가 지급되는 교수 (호 신설 2007.6.18)
2. 출연석좌교수는 본교 이외 외부기관의 지원에 의하여 보수가 지급되는 교수 (호 신설 2007.6.18)
(조개정 2007.6.18)

제3조(자격) 석좌교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특정전공분야에서 국내외적으로 학문적 업적이 탁월하고 명망이 높은 사람
2. 과학기술분야에서 20년 이상 종사하고 세계적 수준의 발명이나 특허를 얻은 사람
3. 학술원 또는 예술원 회원과 국내외의 권위 있는 학술상 수상자
4. 기타 석좌교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호 신설 2007.6.18)

제4조(임용절차) ① 석좌교수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한다.

- ② 석좌교수를 추천할 때에는 추천자의 추천서, 이력서, 학문적 또는 사회적 업적개요 및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본교 교원인사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된 사람은 재 추천 할 수 없다.
(조개정 2007.6.18)

제5조(임기 등) ① 석좌교수의 임용기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7.6.18)

1. 초빙석좌교수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호 신설 2007.6.18. 개정 2014.10.22)
2. 출연석좌교수의 임기는 출연기관의 출연조건에 따른다. (호 신설 2007.6.18)
- ② 임용기간을 연장하여 재 위촉하고자할 때에는 제4조의 절차에 따라 임용기간만료일 이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8)
- ③ 삭제 (2007.6.18)

제6조(처우) ① 초빙석좌교수의 보수는 총장이 따로 정하며, 출연석좌교수는 당해 기부금이나 이를 바탕으로 조성된 재원의 예산 범위내에서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다만, 특별한 재원에 의하는 경우는 이에 기초한 계약내용에 따른다. (개정 2007.6.18)

- ② 석좌교수의 복무는 임용조건에 따르며 위촉기간 중 본교에서 강의, 연구, 특별강연, 세미나, 기타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자문을 담당할 수 있다. (개정 2007.6.18)

제7조(기금관리) 석좌교수의 운영기금은 본교 기획평가처에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장은 필요에 따라 기부금 부담기관에서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06.25)

제8조(세부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과-10, 2006.1.4)

이 규정은 2006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과-677, 2007.6.21)

이 규정은 2007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과-795, 2014.10.22)

이 규정은 2014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팀-330, 2019.06.25)

이 규정은 2019년 06월 25일부터 시행한다.